

신구조문 대비표 – 수입거래약정서

거래문서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수입거래약정서	<p>제 8 조 상환채무의 부담과 수입환어음 등의 결제</p> <p>⑤ 수입자가 신용장 조건이나 다른 방법으로 개설은행인 은행에게 선적서류 확인 전 수익자 등에 신용장에 따른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은행이 실제로 그에 따른 지급을 한 경우 (관련 신용장에 의하여 매입은행이 자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거나 권한을 준 경우를 포함), 수입자는 은행에 추후 제출되는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은행에 대하여 상환채무를 부담한다.</p>	<p>제 8 조 상환채무의 부담과 수입환어음 등의 결제</p> <p>⑤ 수입자가 신용장 조건이나 다른 방법으로 개설은행인 은행에게 선적서류 확인 전 수익자 등에 신용장에 따른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은행이 실제로 그에 따른 지급을 한 경우 (관련 신용장에 의하여 매입은행이 자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거나 권한을 준 경우를 포함), 수입자는 은행에 추후 제출되는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은행에 대하여 상환채무를 부담한다.</p> <p><조항신설></p> <p>⑥ 기한부신용장인 경우, 수입신용장의 수익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수입자는 은행이 수입신용장에 따른 상환청구의 할인된 금액을 수익자 앞 지급한 경우에도, 만기일에 상환청구 전액을 은행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 수입신용장 또는 은행과의 기타 계약에 따라 수입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수입자는 만기일 또는 은행이 요청한 날짜에, 상환청구 전액과 지급일(당일 포함)에서 만기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상환 청구 금액에 대하여 산출된 이자를 은행에 지급해야 한다.</p> <p>⑦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조기상환수수료에서 정부 또는 기타 세무 당국이 부과하는 세금(부가가치세, 판매세, 원천징수세 등), 부과금, 관세, 수수료, 평가료 등(이자, 과태료, 이에 대한 추가금을 포함)이 공제 또는 징수되거나 이에 대한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⑧ 신용장을 인수함으로써, 수입자는 수입자가 해당 세무 당국에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은행에 부과된 수수료 및 이자 그리고 세금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은행이 요청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본 조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p> <p>제 17 조 수입신용장 개설에 관한 특약</p> <p><조항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은 국제상업회의소 문서번호 600 (2007년도 개정)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에 따른다. 2. 요구서류에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자는 은행에 	<p>당행이 개설시 상환은행에게 상환수권을 주어 당행의 서류심사 전 수익자에 대한 대금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p> <p>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수입자의 상환채무 부담을 보다 상세히 명기함으로써 수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 함</p>
17 조 조항신설			<p>수입신용장 개설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약정사항을 수입거래 약정서에 일괄적으로 편입</p>

신구조문 대비표 – 수입거래약정서

거래문서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개설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의 명의로 되어 있고 CFR금액에 최소한 10%를 추가한 금액에 해당하는 은행이 수락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증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수입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은행은 수입자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p> <p>3. 은행은 신용장에 따른 서류에 은행이 행정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추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p> <p>4. 수입자는 신청서에 명시한 화물의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허가가 필요한 경우 유효한 수입허가서를 은행에 제시하기로 한다.</p> <p>5. 환어음은 발행인이 요구하는 경우 “비소구 조건”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p> <p>6. 은행은 신청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에서 수입자가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문구, 즉 “화물의 송장금액 전액에 대하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람출금 <input type="checkbox"/> 일람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 정기출금의 환어음”이라는 문구를 포기/삭제하는 것이 적당하거나, 관례적이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은행의 재량으로 포기/삭제할 권한이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p> <p>7. 신청서 기재의 “추가조건”에 명시적인 반대의 지시가 없는 경우, 은행은 은행의 재량으로 다른 은행이나 그 지점에 환어음 및 또는 기타 서류를 1회 또는 수회의 우편이나 기타 운송수단을 통하여 발송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p> <p>8. 수입자는 해당 신용장에 따라 서류가 제시된 때에 은행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출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할 권한을 보유함을 인정한다.</p> <p>9. 수입자는 UCP600의 제 34조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은행이 해당 신용장에 따라 지급/인수(결제) 또는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반대되는 증거가 없으면 그 선의 및 지급/인수(결제) 또는 매입 사실이 추정됨을 인정한다.</p> <p>10. 수입자는 선하증권 또는 그에 의해 표창된 화물의 수하인으로서의 은행의 지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은행을 상대로 제기되거나, 은행이 처하거나 입게 되는 모든 소송, 절차, 청구, 손실, 손해 및 제비용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한 은행에 보상하기로 한다.</p> <p>11. 은행은 수입신용장 조건 불일치에 관한 조회 요청시, 수입자의 회보가 2영업일 이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수입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 지급, 인수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17.2 개별 수입신용장 개설설 보험증권에 대한 은행의 취급절차를 설명</p> <p>17.3/4 추가적인 서류등의 제시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림</p> <p>17.6/7/8 수입신용장 개설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례나 발송에 관한 은행 재량을 명시</p> <p>17.9 UCP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사항에 대해 고객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p> <p>17.10/11/12 수입신용장 개설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취급절차에 대한 설명을 명시</p>

신구조문 대비표 – 수입거래약정서

거래문서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8조 조항신설	<p>제 18 조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발급에 대한 특약</p> <p><조항신설></p> <p>1.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이하 보증서)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청구, 요구, 책임, 손실, 손해 및 비용(정부기관이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부담금, 부과금 등을 포함함)과 외국환이체수수료, 환차손에 대해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은행에 보상하며,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고, 위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 및 책임에 대해 은행이 실제 이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하는 즉시 은행에 지급하도록 한다.</p> <p>2.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 상의 불일치 또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위에 기술된 선하증권과 기타의 선적서류를 인수한다. 위의 불일치와 결함으로 인해 수입자가 은행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 또는 청구를 포기한다.</p> <p>3. 보증서 신청에 따라 수입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은행이 요구하는 금액(“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한다. 담보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건을 적용하기로 약정한다.</p> <p>(1) 보증서 신청에 따른 수입자의 채무가 보증서의 종료에 따라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는 담보금은 은행의 소유로 하고, 보증서 종료시 수입자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으면 담보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반환받기로 한다.</p> <p>(2) 본 약정에도 불구하고 담보금은 부보 또는 신용장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자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며 은행은 담보금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본인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만약 이러한 충당의 결과 위 담보금이 정부당국 또는 은행의 규정 상 요구되는 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은 즉시 부족분을 추가 예치하도록 한다.</p> <p>(3) 은행의 선택에 따라 담보금을 매입은행을 통해 수출자에 대한 또는 보증서에 따라 선박회사에 대한 지급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환전 당일의 실제환율에 따라 외국통화로 환전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으로 생기는 위험부담은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p> <p>4. 보증서 신청서에 따른 수입자의 채무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수입자가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화물을 은행에 인도하기로 약정한다.</p>	수입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입서류가 내도하기 전에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해당 특약을 수입거래약정서에 포함시켜 고객의 편의성을 높임

신구조문 대비표 – 수입거래약정서

거래문서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5. 수입자는 또한 은행이 선하증권 원본을 수령하는 즉시 이를 선박 회사에 직접 송부하거나 은행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p> <p>6. 수입자는 보증서에 언급된 선적서류는 다른 은행, 회사 또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것임을 보장하고 또한 은행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고 합의한다.</p> <p>7. 수입자가 은행과 체결한 수입거래약정서를 준수할 것이며, 동 약정하에서 발생하는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보증서 발급시 적립한 담보금을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p>	
제 17 조 서류제출	제 19 조 서류제출		조항 번호의 변경
제 18조 적용기간	제 20조 적용기간		조항 번호의 변경
제 19조 언어	제 21조 언어		조항 번호의 변경
제 20조 준용규정	제 22조 준용규정		조항 번호의 변경